## ●환경부고시 제2023-1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환경부장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내용
직접노무비	1. 직접노무비는 진단업무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
	시설별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서 현장진단의 업무단계별ㆍ시설별 총공량은 1건으로 안전진
	단 신청한 대상시설의 시설별 공량에 시설별 시설용량 보정계수와 시
	설별 시설수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의 합계 값으로 하고, 나
	머지 진단업무단계의 업무단계별ㆍ시설별 총공량은 진단업무단계별
	공량에 총시설용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u>환경부문</u> 의 노임단가로 한다.
직접경비	직접노무비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경비	직접노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료	직접경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